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00
----------	-------

발의연월일 : 2022. 3. 18.

발 의 자 : 서일준 · 이명수 · 김용판
추경호 · 권명호 · 하영제
김승수 · 박완수 · 이종성
양금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한 등기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또한, 등기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욱 불편한 상황임.

이에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할이 아닌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 서류를 관할 등기소로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1조 중 “제출하는 방법”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생략) <u><신 설></u>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이 아닌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서류를 관할 등기소로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신청의 각하) ----- ----- ----- -----. ----- ----- ----- ----- ----- -----.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u><삭 제></u>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101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제101조(이의절차) ----- -----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u>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u>	----- <u>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u> <u>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u> <u>를 보내는 방법-----.</u>
--	---